

의안번호	제 369 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월 일 (제 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4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369
----------	-----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20.1.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재정지원계정 및 융자관리계정의 재원규모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된 법령(“20.1.1일 시행) 및 개정 예정인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7년 7월 관련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 시도 조합회의 구성위원을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2항제1호)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24조)
-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 (안 제26조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3. 참고사항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절차
 - ① 조합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 ②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각 시·도)
 -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제1항)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향후계획

- 의회 의결사항 통지 (행안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역발전”을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재정분야”를 “지방재정 분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6조 중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을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자관리계정”을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8조제4호”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로, “재정지원계정”을 “발전기금”으로, “각종 경비”를 “경비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 제20조제1항 중 “배분한다”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1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24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5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6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제16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p>1. · 2. (생략)</p> <p>3. <u>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u></p> <p><u><신 설></u></p> <p>4. ~ 10. (생략)</p>	<p>제5조(조합의 사무)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발전과 지역상생</u>----- -----</p> <p>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p> <p>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p>
<p>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p> <p>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u>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u></p> <p>2. <u>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u></p> <p>3. <u>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u></p>	<p>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u></p> <p>2. <u>행정안전부</u>----- -----</p> <p>3. <u>행정안전부장관</u>-----</p>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④ (생략)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행정안전부장관-----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

----- 행정안전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합장) ① -----
----- 지방재정 분야-----
----- 행정안전부장관-----
----- 제28조-----

-----.

②·③ (생략)

제14조(사무기구) ① (생략)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사용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생략)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8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 재정지원계정, 사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③ -----

----- 행정안전부장관-----

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결산) ① (생략)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용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

② -----
-----.

1. 법 제18조제1항제4호-----

2.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생략)

4. 그 밖에 재정지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융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3. 재정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 발전기금----- 경비의 지출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

---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융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

② 용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3. (생략)

4. 그 밖에 용자관리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 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

1. ~ 5. (생략)

<신설>

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2.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항제1호 -----

--.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제24조 (생략)

제7장 보칙

<신설>

제25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으로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분석) ① ----- 법제21조-----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6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제28조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사무위탁) -----

----- 법 제17조제6항-----
-----.

제8장 보 칙

제29조·제30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2010. 5. 7 제정] [2015. 3.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 20)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2.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3.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5. 조합채의 발행
6.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8.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9.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10.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일부개정 2015. 7. 16)

1.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2.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3.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제1항의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 및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조합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조합회의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조합장의 임기는 수탁기관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

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용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4. 그 밖에 재정지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한다.

②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방법 등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용자관리계정 운용

제21조(용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용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3. 재정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용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전출
4. 그 밖에 용자관리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방채 등 인수 기준 등) ①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지방채 등 인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③ 지방채 인수 기준, 이자율, 인수절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금)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2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계정 운용에 관한 특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계정 중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 3. 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용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용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용자에 대한 결산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